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547
----------	-------

발의연월일 : 2026. 8. 12.

발 의 자 : 엄태영 · 이소희 · 이만희
김상훈 · 이상휘 · 박충권
안철수 · 권영진 · 윤한홍
이종배 · 김용태 · 김재섭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질병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러한 농어업안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실태조사의 조사사항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농어업작업 유해요인 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근거가 미흡하고, 농어업작업 관련 질병의 발생 위험이 높은 고령 농어업인 등에 대한 예방교육의 실시 근거도 미흡한 실정임.

이에 농어업작업 관련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태조사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고령 농어업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업안전재해 예방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농어업인의 건

강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및 제16조의4 신설 등).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의 성별·연령·건강상태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발생 원인 및 현황에 관한 사항
3. 농어업작업 관련 유해·위험요인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어업작업 특성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에 관한 사항

제1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4(예방교육의 실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고령 농어업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통계의 수집·관리 및 실태조사 등) ①·② (생략)	제15조(통계의 수집·관리 및 실태조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u>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의 성별·연령·건강상태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u> 2. <u>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발생 원인 및 현황에 관한 사항</u> 3. <u>농어업작업 관련 유해·위험 요인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u> 4. <u>그 밖에 농어업작업 특성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에 관한 사항</u>
③·④ (생략)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u><신 설></u>	제16조의4(예방교육의 실시) ①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고령 농어업인 등 대통</u>

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